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50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 9.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44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4. 7. 18.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2.)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 11. 12.)
	2202970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8. 20.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31.)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2.)
	2206175	윤한홍의원 등 16인	2024. 12. 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2206908	감남근·산장식· 한창민의원 등 24인	2024. 12. 24.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2.)
				소위원회 직접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2208104	이정문의원 등 12인	2025. 2. 12.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2.)
	2210863	이강일의원 등 10인	2025. 6. 16.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7. 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2.)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는 위 6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5. 14.)는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의사결정권자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인”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합병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

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 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165조의18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4의3. 제16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u>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u> <u>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u> <u>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u> <u>에 따라야 한다.</u> 1. ~ 4. (생 략) <u><신 설></u>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 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u>주권상장법인이-----</u> ----- ----- -----<u>하는 경우 그 가액은</u> <u>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u> <u>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u> <u>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u> <u>여야-----.</u> 1. ~ 4. (현행과 같음)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u>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u> <u>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u> <u>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u> <u>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u> <u>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 ③ ----- ----- ----- ----- ----- ----- -----<u>합</u>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병 등에-----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⑤ -----

----제3항-----
-----.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

<u>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를 공시하여야 한다.</u>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u>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u>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u>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u>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u>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를 공시하여야 한다.</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u>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신 설>

5. (생략)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lines arranged vertically. Each set includ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entire page is white with no other markings or text.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5조의4제3항-----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
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
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4의3. 제165조의4제6항을 위반
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
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

6. ~ 25. (생략)	<u>한 경우</u> 6. ~ 25. (현행과 같음)
---------------	----------------------------------